

◆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◆

- 전문위원 이 재호 입니다.
- 「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18일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.
-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내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,
-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.

□ 주요골자

- 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” 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관할 구역의 모든 관리지역으로 정함(안 제16조)

【 검토결과 】

-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·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는
-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 (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)을 설치하도록 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나,

- 현행 조례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
- 상위법인 「주차장법」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흡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